

인공임신중절은 올바른 선택인가?

철도경영학과 202310279 권현준

1. 서론

최근 많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은 중절 수술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의학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임신중절은 윤리적, 법적, 종교적 등 다양한 논란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념, 가치관, 법적 규정 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인공임신을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로 여기며,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태아가 인간의 생명이라고 여기며 인공임신중절을 적절치 않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성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의 건강과 복지, 신체적, 정신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의학적 옵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임신 중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중절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에 선택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본론

다수의 사람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데 일단 인공임신중절이 무엇이나, 중절 수술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의학적 절차를 말합니다. 왜 임신을 종결시키는 행위에 대해 찬성하냐면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충분치 않거나, 가정이나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출산이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하였거나, 강제로 임신을 하였을 때 인공임신중절을 하여 정상적인 원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임신중절이 가장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여건과 상황이 안 되는데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일생을 보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출산이 어려운 환경에는 인공임신중절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이다. 다른 이유로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여성이 권리와 자기 결정권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택 사항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지므로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다.

1)3. 반론

임공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 당시 판결문에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라는 글을 인용하여 헌법에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되어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2 재반론

태아의 태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도 있지만, 산모의 생명도 보호할 의무도 있다. 임신이 의료적인 문제나 위험으로 이어질 경우, 산모와의 합의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을 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선택일 수 있다.

4. 결론

많은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을 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을 찬성하고, 산모의 생명권도 존중하지만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하다. 따라서 가장 좋은 선택지는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하거나 성교육을 통해 임신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임신을 했다면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한 후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또다른 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의 전망은 각 개별적인 사례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임신의 기간, 임신의 원인, 환자의 건강 상태, 의료진의 경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뻛 상황에 따라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인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환자의 건강 상태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은 많은 찬성을 받을 것 이리고 생각하고, 인공임신중절을 할 일을 안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이다.

1) 3.1 반론: 이대웅기자, “태아 한 명 더 살릴 ‘태아생명 보호법’ 제정” 2022년 10월 10일 수정, 2023년 5월 19일 접속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0379>

3.2 재반론, 4 결론 전망제시 : 임신이 의료적인 문제나 위험으로 이어질 경우, 산모와의 합의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을 해야 한다. 챗 지피티 2023년 5월 19일 접속